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향소 및
주식회사 모나미이미징솔루션즈와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
확정하고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
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주주확정 기준일 : 2025년 09월 17일

2025년 09월 02일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7(동천동)

주식회사 모나미 대표이사 송 하 경(직인생략)

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